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

- 전자우편 : kk3033@korea.kr

- 팩 스: 044-201-5547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에서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(전화 044-201-3539, 3546, 팩스 044-201-55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77호

관보 제19776호(2020. 6. 19.)에 게재된 "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28호(조정대상지역 지정)"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년 6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정정사항1

관보 내용	정정사항	비고
경기도 고양시, 남양주시(화 도읍, 수동면 및 조안면 제 외), 군포시, 안성시(일죽면, 죽산면 죽산리·용설리·장 계리·대산리·장릉리·장원 리·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·덕산리·율곡리·내장리· 배태리 제외),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용인시 처인구(포곡 읍, 모현면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·사암리·미 평리·좌항리·맹리·두창리 제외), 오산시, 평택시, 광주시 (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 촌면,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), 양주시, 의정부시, 인천 광역시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대전광역시 동구, 충 구, 서구, 대전광역시 동구, 충 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, 충청 북도 청주시(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 면, 현도면,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)	경기도 고양시, 남양주시(화 도읍, 수동면 및 조안면 제 외), 화성시, 군포시, 안성시 (일죽면, 죽산면 죽산리・용 설리・장계리・대산리・장릉 리・장원리・두현리 및 삼죽 면 용월리・덕산리・월고리 · 내장리・배태리 제외), 부 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용인시 처인구(포곡읍, 모현면, 백암 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리・사암리・미평리・좌항리 · 맹리・두창리 제외), 오산 시, 평택시, 광주시(초월읍, 남종 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), 양주 시, 의정부시, 인천광역시 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, 충청북도 청 주시(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 면,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)	관보 제19776호(2020. 6. 19.) 1 쪽, 위에서 12번째 행

□ 정정사항2 시 현 행 조 정('20.6.19) 도 서 서울 25개구 좌동 울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, 고양시^{주1)}, 남양주시^{주2)}, 하남시, 동탄2택지개발지구^{주3)}, 구리시, 좌동 안양시, 광교택지개발지구^{주4)}. 수원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 기흥구, 의왕시 고양시, 남양주시(화도읍,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), 화성시, 군포시, 경 안성시(일죽면, 죽산면 7] 죽산리 • 용설리 • 장계리 • 매산리 • 장릉리·장원리·두현리 및 삼죽면 관보 내용 <신규 지정> 용월리 • 덕산리 • 율곡리 • 내장리 • 배태리 제외),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용인시 처인구(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촌면,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), 오산시, 평택시, 광주시, 양주시, 의정부시 인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<신규 지정> 부평구, 계양구, 서구 첡 대 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 <신규 지정> 젉 세종특별자치시^{주5)} 세 좌동 좆 (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) 청주시(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면, 충 <신규 지정> 북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)

	시			
· 도 서 울 정정사항		현 행	조 정('20.6.19)	
		서울 25개구	좌동	
		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, 고양시 ^{주1)} ,		
		남양주시 ^{주2)} , 하남시,		
		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3)} , 구리시,	ə] C	
		안양시, 광교택지개발지구 ^{주4)} ,	좌동	
		수원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		
		기흥구, 의왕시		
			고양시, 남양주시(화도읍, 수동면 및	
			조안면 제외), 화성시, 군포시,	
			안성시(일죽면, 죽산면	
	경		죽산리 · 용설리 · 장계리 · 매산리 ·	
	7]		장릉리·장원리·두현리 및 삼죽면	
			용월리 · 덕산리 · 율곡리 · 내장리 ·	
		<신규 지정>	배태리 제외), 부천시, 안산시,	
			시흥시, 용인시 처인구 <mark>(포곡읍</mark> ,	
			모현면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	
			가재월리・사암리・미평리・좌항리・	
			맹리·두창리 제외), 오산시, 평택시,	
			광주시(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	
			퇴촌면,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	
			제외), 양주시, 의정부시	
	인	<신규 지정>	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	
	<u>천</u> 대		부평구, 계양구, 서구	
전 세 종		<신규 지정>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	
		세종특별자치시 ^{주5)}		
	종	(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)	좌동	
		<신규 지정>	청주시(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	
	충		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면,	
	북		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 및 북이면	
			제외)	
	관보	제19776호(2020. 6. 19.)		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79호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·확산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453호, 2019.4.30. 제정) 및 시행령(대통령령 제30656호, 2020.5.1. 제정),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721호, 2020.5.1. 제정)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(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(안 제2조 및 제3조)

-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
- 위원회의 회의개최 사유 및 개의(開議) · 의결,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나.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(안 제4조)

- 자율주행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개의(開議)・수당(手當)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.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및 변경・해제 절차(안 제5조 및 제7조)
- 지자체장이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
-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변경·해제 시에는 공동으로 변경·해제 신청을 하도록 함
- 운영계획서에 조례 제·개정 계획 및 연구·시범운행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
- 라.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준 (안 제6조 및 별표1)
-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하고, 심의 점수가 심의 기준 상 각 지표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도록 함
- 마.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(안 제8조 및 별표2)
 - 시행령 제8조·제9조에 따라 부착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표지의 디자인을 정함
- 바. 여객ㆍ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여객·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
- 특례 신청 시 운전자의 지정·관리, 안전관리방안, 필요한 부대시설, 운행행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함